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부천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천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1호)

현재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함.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안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조 내지 제6조)
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되, 기본항목은 생명보험·상해보험 등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복지혜택 중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안 제3조)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300일 이상 상근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적용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도록 함.
- 맞춤형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부여 및 관리(안 제7조 내지 제9조)
시장은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인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1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부 비대한 국·과 단위 조직을 분리

- 신설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 사회복지, 공원관리, 도시정비, 도서관, 보건,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증설함으로써 86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시의원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p> <p>○ 안 제8조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점수 300점 이내 총액점수 900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p> <p>○ 복지혜택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연가하고는 상관이 없는지?</p> <p>○ 제도 운영시 위탁한다는데 관리나 예산상 문제가 없는지?</p>	<p>○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봄.</p> <p>○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p> <p>○ 연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p> <p>○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위탁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 없이 예산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를 내부지침이나 규정에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는 무엇인지?</p> <p>○ 안 제10조 사항의 내용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p> <p>○ 복지점수 부여시 근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일하는 직원과 안하는 직원과의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p>	<p>○ 중앙부처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 복지점수 정산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것으로 개별적으로 복지점수를 사용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p> <p>○ 복지 점수 부여시 업무성과, 징계 등 고려하고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24호
의결 년월일	2005. 9. 5 (제121회)

제출년월일 : 2005. 9. 5.

제출자 : 부천시장

1. 수정이유

- 안 제10조 회계처리의 특례에서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남용 또는 부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지 못하도록 수정.

2. 주요골자

-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를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로 수정.(안제10조)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중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를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u>간소화</u>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p>	<p>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 ----- ----- -----<u>간소</u> 화할 수 있다.</p>

[수정안 포함]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

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부천시 소속공무원과 상근인력(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자율항목)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과면·휴직·과견(휴직 또는 과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1조(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국장, 복지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